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14 발의연월일: 2024. 10. 16.

발 의 자:최은석・우재준・고동진

이인선 · 이달희 · 박충권

정동만 · 서일준 · 김종양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8조의6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 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6제1 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위임	및	위탁)	1	(생	제32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의6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
					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u>②·③</u> (생	략)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